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616 호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2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3호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4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5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6호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7호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8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9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0호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1호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2호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3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4호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5호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6호 인천광역시서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조례	2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7호 인천광역시서구국가보훈대상자등에우뭇 지원에관한조례	3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8호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9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0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1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2호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3호 인천광역시서구지하수관리조례	4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4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57

조	례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 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1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조 중 “월1,256,000원”을 “월1,738,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 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3호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 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71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70호까지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775”를 “789”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6”을 “770”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보건 지소	출장소	동
총 계	789	488	19	42	18	46	176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98	432	13	38	18	42	155
부구청장(3급)	1	1					
4급	5	3	1	1			
5급	47	22	2	4	1	1	17
6급	140	102	3	6	3	9	17
7급	199	123	3	8	5	17	43
8급	212	139	3	10	6	11	43
9급	94	42	1	9	3	4	35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1	1					
7 급 상 당	1	1					
기능직 계	88	53	6	4		4	21
기능6급	2	2					
기 능 7 급	5	5					
기능8급	11	10				1	
기능9급	27	19	3	1			4
기능10급	43	17	3	3		3	1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실과별 란의 녹지경관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경관과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 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 동법 제17조 - 동법 제20조 - 동법 제20조의2	
	2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처리 나. 3,000㎡이하 임야의 임목 벌채 허가 및 벌채신고, 부정 임산물 도·남벌 단속 등 보호 다. 산불예방을 위한 허가 및 기타 조치 라. 산불진화를 위한 동원 및 기타 조치 마. 전용면적 2,000㎡ 이하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적용 포함) 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업(조림, 육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7조 제3항 - 동법 제36조 - 동법 제53조 - 동법 제53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 15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경관과	3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묘지공원 및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녹 지제외) 가.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 및 협의 등 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 위탁료 징수 다. 공원·녹지의 관리 라.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마.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제3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7호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와 제2조 중 “제13조의4” 를 “제16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0호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1호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 자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2호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하고, 제3항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3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을 “에서 정하는 별정직”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규칙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4호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현재”를 “전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수급자 및 무주택자의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고”를 “수급자를 우선 선발(모집정원의 50% 이내)하고”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 채용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5조 중 “모집한다.”를 “공개 모집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직접방문하여”를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이 직접 추천토록하고”를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공개추천하고”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 하여 성실히 근무 하여야 한다.
- ② 부업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기타 공무원에준하는 복무 규정 위배 시에는 소속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무중단을명할 수 있다.
- ③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매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부업대학생의 근무전반의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을 “각호에서 정하는” 으로,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제1항 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를 “제5조, 제7조내지 제9조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 제1항” 을 “ 제4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기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